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주체 81(1992)년 1 월 15 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2 호로 채택

주체 93(2004)년 5 월 6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436 호로 수정보충

주체 94(2005)년 7 월 26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225 호로 수정보충

주체 95(2006)년 10 월 18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035 호로 수정보충

주체 95(2008)년 4 월 29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690 호로 수정보충

주체 98(2009)년 2 월 3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054 호로 수정보충

주체 98(2009)년 3 월 31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157 호로 수정보충

주체 98(2009)년 4 월 28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7 호로 수정

주체 99(2010)년 12 월 6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249 호로

주체 100(2011)년 10 월 19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913 호로 수정보충

주체 101(2012)년 5 월 14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87 호로 수정보충

주체 101 (2012)년 8 월 14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614 호로 수정보충

주체 105(2016)년 8 월 10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245 호로 수정

주체 109(2020)년 7 월 7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51 호로 수정

주체 110 (2021)년 1 월 20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510 호로 수정보충,
주체 110(2021)년 3 월 1 일부터 시행

주체 111(2022)년 6 월 30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998 호로 수정보충,
주체 111(2022)년 11 월 1 일부터 시행

주체 112(2023)년 5 월 30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323 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 1 조（형사소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계급로선의 관철원칙）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여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 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제 3 조（군중로선의 관철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적극 의거하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철저히 옹호하도록 한다.

제 4 조（범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공민들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범죄를 미리막도록 한다.

제 5 조（전면성과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전면성과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 6 조（인권의 보장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 7 조（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언어의 사용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를 조선어로 하도록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자에게는 통역인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은 형사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수 있다.

제 8 조（법에 규정된 원칙과 요구, 절차와 방법의 준수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를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요구,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한다.

제 2 장 일반규정

제 1 절 형사소송관계자

제 9 조（형사소송관계자의 구분）

형 사소송관계 자에 는 형 사소송담당자와 형 사소송관여자가 속한다.

제 10 조（수사의 담당자）

수사는 해당 법기관의 전문수사원이 한다.

전문수사원이 아닌 일군도 수사를 할수 있다.

제 11 조（기소의 담당자）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한다.

제 12 조（재판의 담당자）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재판소가 한다.

제 13 조（비밀엄수 및 형사사건취급처리방해금지）

형사소송관계자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참가하여 알게 된 비밀을 지키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방해되는 일을 하 지 말아야 한다.

제 14 조（리해관계에 따라 형사소송에 참가할수 없는 사유）

수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해당 형사사건의 취 급처리결과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을 경우 그 사건의 취급처리에 참가할수 없다.

제 15 조（형사소송임무를 겸할수 없는 사유）

수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 인, 립회인, 보증인은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수 없다. 그러나 검사, 증인은 손해보상청구자 로서의 임무를 겸할수 있다.

수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 인, 립회인, 보증인은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도 자기가 담당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의 다른 소송관계자로 될수 없다.

제 16 조（사건을 다시 수사, 감시할수 없는 사유）

형사사건을 과장날조한것이 재판소가 사건을 반송한 근거로 된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하였던 수사원과 검사는 다시 수 사, 감시를 맡아할수 없다.

제 17 조（사건을 다시 심 리하는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는 사유）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 1 심 또는 제 2 심, 비상상소심 또는 재심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그러나 수사가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반송하였던 형사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에는 참가할수 있다.

제 18 조（증인으로 될수 없는 사유）

이 법 제 15 조의 사유가 있는자와 정신 또는 신체상장애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본 사실을 옳게 리해할수 없거나 정확히 표현할수 없는자는 증인으로 될수 없다.

제 19 조（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으로 될수 없는 사유）

이 법 제 14 조, 제 15 조의 사유가 있거나 국가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한자는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으로 될수 없다.

제 20 조（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

소송관계자는 이 법 제 14 조～제 19 조의 사유가 있을경우 다른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다음과같이 할수 있다.

1. 수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검사에게 한다.

2.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재판소에 한다.

3. 검사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수사, 기소단계에서는 그가 속한 단위책임자에게, 재판단계에서는 재판소에 한다.

4. 소송관여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수사원, 재판소에 한다.

제 21 조（수사, 기소단계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수사, 기소단계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받은 수사원, 검사, 검찰기관의 단위책임자는 3 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수사원, 검사는 자기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에 대한 해결이 있을 때까지 수사, 감시와 기소활동을 계속한다.

제 22 조（재판단계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재판심리에 참가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바꿀 대상으로 지적된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제외한 그밖의재판소성원 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가운데서 한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바꾼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심리할 재판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를 다시 구성한다.

제 23 조（형사소송관계자들의 권리포기）

수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변호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 회인, 보증인은 이 법 제 14 조～제 19 조의 사유가 자신에게 있을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제 2 절 증거

제 24 조（과학적증거에 기초한 형사사건의 취급처리）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는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한다.

제기된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법에 따라 수집되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확인된 자료만이 사건해결의 기초로서 의 증거로 될수 있다.

제 25 조（증거의 종류）

증거로는 증인의 말, 감정결과, 검증결과, 증거물, 증거문서, 범죄자의 말에서 얻은 자료가 된다.

제 26 조（증거로 확정하여야 할 대상）

범죄의 표징을 이루거나 형벌을 정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은 증거로 확정되여야 한다.

제 27 조（증거의 수집, 리용에서 제한금지）

수사원,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과 리용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28 조（증거의 수집）

증거는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고 과학기술적 및법적수단과 방법에 기초하여 찾아낸다.

찾아낸 증거는 진술서,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고착한다.

필요에 따라 사진을 찍거나 략도를 그리거나 록음, 록화 같은 방법으로 고착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진술서, 조서 에 밝힌다.

제 29 조（증거의 검토）

수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수집된 증거자체를 분석하거나 이미 검토확인된 다른 증거, 새로 수집한 증거와대조확 인하는것같은 방법으로 검토한다.

제 30 조（증거의 평가）

수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수집하고 검토확인한 증거를 개별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 31 조（범죄자의 말에 대한 평가）

강압, 유도유출에 의하여 한 범죄자의 말은 증거로 쓸수 없다.

범죄자의 말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의 범죄가증명되지 않은것으로 인정한다.

범죄자가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범죄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지면 증명된것으 로 인정한다.

제 32 조（증거물의 수집과 립회）

증거물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는가에 따라 증거물발견조서, 증거물제출조서, 수색, 압수조서, 현장검증조 서에 등록한다.

증거물의 형태와 특징, 흔적은 증거물검증조서로 고착한다.

증거물을 등록하고 고착시킬 경우에 2 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 33 조（증거물의 보관）

증거물은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기관이 봉인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보관한다.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기관이 보관하기 어려운 증거물은해당 기관에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수집한 귀금속은 은행에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으며 현금은 은행의 해당 구좌에 입금시키고 림시입금증을 받아 사건 기록에 첨부한다.

제 34 조（증거물의 이관）

형사사건을 다른 기관에 보낼 경우에는 증거물을 사건기록과 함께 넘겨준다.

증거물을 임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돌려주었거나 넘겨준 경우와 이관이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거문건을 넘겨준다.

제 35 조（사건종결전단계에서 처리할수 있는 증거물）

다음과 같은 증거물은 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소유자, 점유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주거나 폐기할수 있다.

1. 썩거나못쓰게될수있는물건
2. 소유자, 점유자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할 물건
3. 증거물이 아닌 물건
4.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있는 기억매체와 마약

제 36 조（사건종결전단계에서 증거물의 처리방법）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주려는 수사원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으며 판사는 판정서를 작성한다. 증거 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준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는다.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있는 기억매체와 마약은 감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몰수, 폐기한다.

형사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처리한 증거물은 형태와특징, 흔적을 검증조서, 사진 같은것으로 고착하여 근거문건과 함 께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 37 조（종결한 형사사건의 증거물처리방법）

형사사건을 종결한 수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소유자, 점유자에게 돌려줄수 없는 증거물은 몰수하거나 페기하며

그밖의 증거물은 소유자, 점유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주고 그 사실을 사건을 종결하는 형사소송문건에 밝 힌다.

증거물을 돌려받았거나 넘겨받은 소유자, 점유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근거문건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 부한다.

제 3 절 관할

제 38 조（관할설정기 준）

관할은 사건이 어느한 법기관에 편중되지 않고 신속정확히 취급처리될수 있도록 법기관의 사명과 임무, 범죄발생지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제 39 조 （인민재 판소관할）

인민재판소는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제 40 조 （도재 판소관할）

도（직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 2 심으로 재판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직접 재판할수 있다.

제 41 조 （특별 재 판소관할）

군사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군사상범죄사건, 군사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 군인, 군사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

군수재판소는 군수공업 부문 사업을 침해한 범죄 사건과 군수공업 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 사건을 재판한다.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 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과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제 42 조 （중앙재 판소관할）

중앙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특별재판소의 제 1 심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 2 심으로 재판하며비상상 소심사건과 재심사건에 대한 재판을 한다.

필요에 따라 하급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 1 심사건을직접 재판할수 있다.

제 43 조 （수사관할）

검찰기 관의 수사 원은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법기 관의 법준수집행정형감시과정에 제기되는일반범죄 사건을 수사한다.

사회안전기관의 수사원은 그밖의 일반범죄 사건을 수사한다.

특별법기관의 수사원은 해당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따르는 범죄사건을 수사한다.

제 44 조（지역 관할）

법기관은 자기의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취급처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법기관에 알리고 범죄자가사는 곳 또는 범죄사건을 적발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기관이 취 급처리할수 있다.

제 4 절 형사사건의 취급시작

제 45 조（형사사건의 취급시작형식）

형사사건의 취급은 수사시작결정, 사건을 수사에 넘기는 결정,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판정이 있은 때부터 시작된다.

제 46 조（형사사건취급시작의 기초자료）

형사사건의 취급시작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범죄에 대한 신고에 기초하여 한다.

해당 법기관이 직접 수집한 범죄자료에 기초하여서도형사사건의 취급을 시작한다.

제 47 조（증거보존 및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범죄를 준비하고있거나 저지르고있거나 저지른것을알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범죄현장, 사건 해결에 의의 있는 물건, 문서가 못쓰게 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그날로 사회안전, 검찰, 보위기관에 신고한다.

제 48 조（범죄에 대한 신고형식）

범죄에 대한 신고는 말이나 글로 할수 있다.

제 49 조（범죄에 대한 신고접수 및 료해）

사회안전, 검찰, 보위기관은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제기된 경우 관할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는 신고서를 받거나 신고조서를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사회안전, 검찰, 보위기관은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제기된 경우 10 일안으로 신고자료의 정확성을 료해할수 있다.

제 50 조（범죄에 대한 신고자료의 이송）

사회안전, 검찰, 보위기관은 접수한 범죄에 대한 신고자료가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할 경우 그날로 해당 기관에 넘겨 준다.

제 51 조（범죄에 대한 신고처리결과의 통지）

범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처리정형을 1 개월안으로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신고자는 신고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신고처리를 한 기관의 상급기관에 다시 신고할수 있으며상급기관은

그 처리정형을 1 개월안으로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제 52 조（직접 수집한 범죄자료의 고착）

사회안전, 검찰, 재판, 보위기관은 임무수행과정에 직접수집한 범죄자료를 해당 법규에 따라 고착한다.

제 53 조（자백자료의 접수 및 처리）

자백은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하며 다른 법기관의 관할에 속할 경우에는 그날로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자백자료를 접수받은 관할법 기관은 정해 진 기간안으로자백 자료의 정확성을 료해하고 처 리한다.

제 5 절 형사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 54 조（형사사건의 병합사유）

수사원, 판사, 제 1 심재판소는 여러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거나 혼자서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으로서각기 취급이 시작된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한다.

제 55 조（혼자서 저지른 여러 범죄사건병합에서 지켜야 할 요구）

혼자서 자기가 사는 곳 또는 여러 지역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사건을 병합하여야 할 경우에는 범죄자를 취급하고있는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일부 범죄가 특별법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특별 법 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제 56 조（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사건병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여러명 이 함께 저지른 범죄사건은 주모자를 취급하는기관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처리한다. 그러나 주모자를모를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먼저 취급하기 시작한 기관에서하나의 사건으로 취급처리한다.

관할이 다른 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사건에서 일부범죄자가 특별법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필요에따라 특 별법기관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처리한다.

제 57 조（형사사건의 병합절차）

형사사건을 병합할 경우에는 사건병합결정, 판정을 하고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제 58 조 （형 사사건분 리 사유）

수사원, 검사, 판사, 제 1 심재판소는 여러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에서 일부 범죄자가 도주하였거나일시적인 정신장애가 있거나 중병을 앓고있어 병이 나을때까지 다른자에 대한 취급처리를 뒤로 미룰수 없거나관할이 서로 달라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는것이 불합리한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을 분리한다.

제 59 조 （형 사사건분 리 절 차）

형사사건을 분리할 경우 사건분리결정, 판정을 하고 해당한 사건기록을 작성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분리한 형사사건을 관할법기관에 넘기는 절차는 이 법 제 124 조에 따른다.

제 6 절 형사소송의 중지 및 의료처분

제 60 조（형사소송의 중지사유）

피심자, 피소자에게 일시적인 정신장애가 있거나 그가중병을 앓고있거나 도주한것과 같이 형사사건취급을 계속할수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중지한다.

정신장애, 중병에 대한 감정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 61 조（형사소송의 중지절차）

수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 60 조의 사유가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수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2. 검사는 기소를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3. 판사, 재판소는 재판을 중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 62 조（형사소송이 중지된 피심자, 피소자처리）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장애자로 되였거나 중병에 걸려 형사소송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 에 따라 의료처분을 적용한다.

제 63 조（의료처분의 종류）

의료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복할수 없는 정신장애자에 대한 의료처분

2. 일시적인 정신장애자에 대한 의료처분

3. 중병에 걸린자에 대한 의료처분

제 64 조（의료처분받은자의 의무）

의료처분을 받은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승인없이 결정서, 판정서에 지적된 지역을 떠나지말아야 한다.

2. 증거를 없애는것같은 형사사건의 조사,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3.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65 조（보증인의 선정）

수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피심자, 피소자에게 의료처분을 하는 경우 2 명의 보증인을 세운다. 이 경우 보증인으 로부터 보증서를 받는다.

제 66 조（보증인의 의무）

의료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같다.

1.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이 법 제 64 조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2.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이 법 제 64 조에 규정된 의무를 어기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67 조（의료처분의 통고）

수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의료처분을 적용한 경우의료처분을 받은자와 그의 보증인에게 의료처분의 적용사유와 지켜야 할 의무를 알려준다.

제 68 조（의료처분받은자에 대한 감시）

의료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감시는 그가 있는 지역을관할하는 사회안전기관이 한다.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있는 지 역을 관할하는 사회 안전기관은 그의 병상태와 치료정 형 , 류동정 형을 본인이 나보증인으로 부터 통보받으며 정상적으로 확인한다.

해당 사회안전기관은 의료처분사유가 없어졌거나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이 법 제 64 조에 규정된 의무를 어긴경우에 의료처분을 적용한 법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69 조（형사소송중지의 해제, 취소）

형사소송중지사유가 없어졌거나 의료처분을 받은자가이 법 제 64 조에 규정된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형사소송중지를 해 제하거나 취소하는 결정, 판정을 하고 형사사건취급을 계속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제 7 절 형사사건의 기각

제 70 조（형사사건의 기각사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한 후에 그것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형사사 건을 기각한다.

1. 14 살에 이르지 못한자의 행위인 경우

2. 저지른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경우

3.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4. 특사로 형벌적용이 면제되였을 경우

5.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은 행위일 경우

6. 이 법에 규정된 수사기간안에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7. 범죄혐의자, 피심자, 피소자가 죽었을 경우

8. 정신장애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른 다음 회복할수 없는 정신장애자로 되였을 경우

제 71 조（형사사건의 기각형식과 절차）

수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 70 조의 사유가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수사원은 형사사건기각（수사취소）결정을 하고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2. 검사는 형사사건기각결정을 한다.

3. 판사, 재판소는 형사사건기각판정을 하고 검사에게 알린다.

제 72 조（형사사건의 기각통지）

형사사건을 기각한 수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그에대하여 48 시간안으로 신고자, 피해자, 범죄혐의자, 피심자,피 소자, 관할지역 사회안전기관에 알려준다.

제 73 조（형사사건을 기각한 경우 의료처분）

수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 70 조 8 호에 따라형사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의료처분결정, 판정을 한다. 이경

우 수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 74 조（기각한 형사사건에서 구속자처리）

형사사건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날로 범죄혐의자, 피심자, 피소자에 대한 구속처분을 해제한다.

제 75 조（기각한 형사사건에서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형사사건을 기각한 수사원, 검사, 재판소는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피해자에게 돌려줄수 없는 재산은 몰수하거나 폐기하고 근거문건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손해보상청구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손해보상청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것을 알려준다.

앞항의 경우 재산담보처분기간을 1 개월 연장할수 있다.그 내용은 수사취소결정서, 사건기각결정서, 판정서, 판결서에 밝힌다.

제 76 조（형사사건의 기각취소）

수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형사사건의 기각이 잘못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취소하는 결정, 판정을 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신고자, 피해자에게는 형사사건의 기각취소에 대하여 알려준다.

제 77 조（형사사건기각취소의 효력）

형사사건의 기각취소를 한 경우 이미 진행한 소송행위와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가지며 그 사건취급을 계속한다.

제 8 절 사회적교양처분

제 78 조（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사유）

검사, 판사, 재판소는 형법 제 54 조에 규제된 조건이 객관적으로 확증된 경우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한다.

제 79 조（사회적교양처분의 시기）

사회적교양처분은 기소, 제 1 심재판, 제 2 심재판, 비상상소심에서 적용한다.

제 80 조（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절차）

검사, 판사, 재판소는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려 할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검사는 피심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결정을 하고 상급검찰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판사, 재판소는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정, 판결을 내린다.

제 81 조（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의 처리）

피심자,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결정,판정,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날로 구속처분을 해제한다.

제 82 조（사회적교양처분을 한 경우 증거물,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한 경우 증거물, 손해보상 및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는 이 법 제 37 조, 제 75 조, 제 302 조에 따른 다.

제 83 조（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교양의 담당자）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교양은 그가 속한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거주하고있는 리 （읍, 구, 동）사무소에서 책 임 진다.

미성인에 대하여서는 그의 부모도 책임진다.

제 84 조（사회적교양처분의 취소사유）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가 법이 정한 기간에 새로운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에게 적용 하였던 사회 적교양처 분을 취 소하고 형 사책 임 을지 운다.

제 85 조（사회적교양처분의 취소절차）

수사원은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에게 이 법 제 84 조의 사유가 나타난 경우 사회적교양처분을 취소하여줄데대하여 검 사, 판사, 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한다.

검사, 판사, 재판소는 사회적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사건을 수사원 또는 검사에게 반송한다.

제 9 절 형사소송문건

제 86 조（형사소송문건작성의 목적）

형사소송문건은 수사원, 검사, 판사, 재판소가 형사소송행위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고착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형사소송행위와 결과는 문건에 고착되여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제 87 조（형사소송문건의 종류）

형사소송문건에는 수사, 기소, 재판준비, 재판심리단계에서 작성하는 결정서, 진술서, 조서, 기소장, 판정서, 판결서 같은것이 속한다.

제 88 조（형사소송문건의 작성방법）

형사소송문건에는 소송행위를 진행한 날자와 장소, 작성자의 소속직무와 이름, 소송행위의 법적근거와 진행과정, 결 과 같은것을 정확히 밝힌다.

진술서,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자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시켜야 한다.

형사소송문건에는 관계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으며 해당한 형사소송문건에는 공인, 명판을 찍는다.

제 89 조（형사소송문건의 비공개）

형사소송문건은 법에 따라 보게 되여있는자를 제외하고는 열람할수 없다.

제 10 절 형사소송기간의 계산과 문건송달, 소송비용부담

제 90 조（형사소송기간의 계산）

형사소송기간의 계산은 시간, 날, 달로 한다. 이 경우계산사유가 생긴 다음시간 또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날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날 24 시에 형사소송기간이끝난다.

달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달가운데서 계산사유가 생긴날과 같은 날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마지막달가운데 서 계산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달의 마지막날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끝나는 날이 국가적휴식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로동일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제 91 조（형사소송문건의 발송기간에 따르는 효력인정）

형사소송문건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낸것으로 인정한다.

형사소송문건을 보내야 할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상당한 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문건을 받아 처리하는기관이 그 기간을 늘여줄수 있다.

제 92 조（형사소송문건의 송달）

형사소송문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이 접수하였을 때 송달된것으로 인정한다. 공민이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성인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형사소송문건을 접수할수 있다.

제 93 조（형사소송비용의 부담）

인민참심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이형사사건취급처리에 동원된 기간의 생활비나 려비는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자의 경우 로력보수와 려비는 그를 부른 기관이 부담한다.

제 11 절 변호

제 94 조（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보장）

형사사건의 취급처 리에서 피 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보장한다.

제 95 조（변호인활동의 독자성）

변호인은 법에 의거하고 사실에 기초하여 변호활동을독자적으로 진행한다.

제 96 조（변호인의 의무）

변호인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이 정확히 취급처리되고피심자, 피소자의 권리와 리익이 보호되도록 한다.

제 97 조（변호인의 선정권）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 권리를가진다.

피심자, 피소자의 가족, 친척, 소속단체대표자도 변호인을 선정할수 있다.

제 98 조（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의 포기）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수 있다.

제 99 조（변호인의 선정신청 및 선임의뢰시기）

사선변호인의 선정신청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때로부터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하기 전까지 한다.

공선변호인의 선임의 뢰는 피심자가 사선변호인선정권을 포기한 24 시간안으로 한다.

제 100 조（변호인의 자격）

변호인으로는 조선변호사회 에 소속된 변호사가 될수있다.

변호사자격을 갖춘자도 변호인으로 될수 있다.

제 101 조（변호인의 선정신청 및 선임의뢰절차）

피심자, 피소자, 그의 가족, 친척 또는 소속단체대표자는 수사원, 판사에게 변호인선정신청을 한다.

변호인선정 신청을 접수한 수사원, 판사는 24 시 간안으로 변호인으로 선정 된자에 게 신청 내 용을 알려 준다.

변호인의 방조를 포기하였던 피심자가 변호인의 방조를요구한 경우에는 수사원, 판사가 변호사회 해당 위원회에 변호 인선임을 의뢰한다.

제 102 조（변호인선정신청 및 선임의뢰에 대한 통지）

변호인선정신청을 받은자 또는 변호인선임의뢰를 받은 변호사회 해당 위원회는 3 일안으로 그 동의여부를수사원, 판사 에게 알려준다.

변호인의 선정동의여부에 대하여 통지받은 수사원,판사는 그날로 변호인선정신청을 한자에게 알려준다.

제 103 조（변호인의 재선정, 재선임）

변호인선정신청을 받은자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수사원 또는 판사가 변호인선정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다시 선정한다.

변호인으로 나섰던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호활동을 계속할수 없거나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에도 변호인을다시 선정 또는 선임한다.

변호인 재선정, 재선임은 이 법 제 101 조에 따른다.

제 104 조（사선변호인의 우선권）

공선변호인이 선임된 다음 사선변호인이 선정되였을경우에는 사선변호인이 변호인으로 된다.

제 105 조（리해관계가 다른 피심자, 피소자들에 대한 변호）

변호인은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피심자, 피소자들을함께 변호할수 없다. 그러나 피심자, 피소자들이 반대하지않을 경 우에는 리해관계가 다른 피심자, 피소자들을 함께변호할수 있다.

제 106 조（변호인의 피심자, 피소자담화）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만나 담화할수 있다.

수사원, 판사, 재판소는 변호인, 피심자, 피소자가 요구할 경우 만나게 해준다.

제 107 조（변호인의 사건기록열람）

변호인은 범죄사건이 기소된 다음 사건기록을 열람한다.

제 108 조（변호인의 변호자료수집과 증거의 검토확인）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변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수집하거나 증거를 검토확인할수 있다.

제 109 조（변호인의 의견제기）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검사, 판사, 재판소에 의견을제기한다.

검사, 판사, 재판소는 제기받은 의견을 3 일안으로 처리하고 변호인에게 알려준다.

제 110 조（변호인의 활동조건보장）

수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법에 따르는 변호인의활동을 적극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 12 절 손해보상

제 111 조（손해보상의 청구자）

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상할 책임이 있는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수사원 또는 판사, 재판소에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위하여직접 재판소에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

제 112 조（손해보상청구의 통고）

수사원, 판사, 재판소는 피심자, 피소자가 저지른 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보상청구 를 할수 있다는것을 알려준다.

제 113 조（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자）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자로는 범죄를 저질러 물질적손해를 준 피심자, 피소자, 범죄의 련루자 또는 범죄자의 행 위에 대하여 재산적책임을 질자가 된다.

제 114 조（손해보상청구의 대상）

손해보상청구는 범죄로 손해를 입은 물질적재산에 대하여 한다.

제 115 조（손해보상청구의 형식）

손해보상청구는 말로 하거나 글로 써낼수 있다.

말로 한 손해보상청구에 대하여서는 조서에 밝힌다.

제 116 조（손해보상청구의 시기）

손해보상청구는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한 때부터 재판에서 사실심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할수 있다.

손해보상청구를 하지 못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의 절차로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

제 117 조（손해보상청구의 심리）

손해 보상청 구는 형 사재 판에 서 함께 심 리 해 결한다. 그러 나 손해 보상청 구심 리 가 재 판심 리 에 지 장을 줄 경 우에 는따로 심 리할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의 기각은 재판소가 한다.

제 118 조（기각된 손해보상청구의 재청구금지）

손해보상청구를 형사재판심 리 에서 기 각하였을 경우에는다시 청구할수 없다.

손해보상청구를 민사재 판에서 기 각하였을 경우에도형 사사건을 심 리 하는 재 판소에 다시 청구할수 없다.

제 119 조（손해보상청구수수료의 면제）

범죄로 입은 물질적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 120 조（손해보상재산의 제출）

수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손해보상책임이 있는자가 손해보상금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은행에 입금시키게하고 림 시 입 금증을 받은 다음 손해 보상재 산제 출조서 를작성 하여 사건기 록에 첨 부한다.

물자재산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손해보상재산제 출조서 를 작성하고 봉인하여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기관에 사건기록과 함께 보관하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자재산은해당 기관에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 3 장 수 사

제 1 절 수사의 임무와 기간

제 121 조（수사의 임무）

수사의 임무는 범죄혐의자를 찾아내여 피심자로 확정하며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것이다.

제 122 조（수사의 기간）

수사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할수 있다. 그러나 피심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이 법 제 138 조, 제 139 조에 규정된 구 속기간안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

제 2 절 수사의 시작

제 123 조（수사시작결정）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았거나 범죄자료를 직접 얻은수사원은 근거를 밝힌 수사시작결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한다.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48 시간안으로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 124 조（수사단계에서의 사건이송）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형사사건을 관할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 사건이송결정을 하여 검사에게 알리 고 해당 수사기관에 넘긴다.

범죄혐의자, 피심자가 구류되여있을 경우에는 사건이송및 이감결정을 한다.

제 125 조（관할지역밖에서의 수사）

수사원은 개별적수사행위를 자기 관할지역밖에서도 직접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할수 있다.

제 126 조（수사의 의뢰）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밖에서 개별적수사행위를 할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수사원에게 의뢰할수 있다.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원은 5 일안으로 수사하고 회보한다.

제 127 조（수사에 대한 감시）

수사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검사는 수사에 참가하거나 소송문건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감시하며 위법적인 수사를 바로잡거나 필요한 수사를 할데 대하여 수사원에게 결정 또는 지시한다.

수사원은 검사의 결정,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제기받은 상급검찰소는 5 일안으로 해결한다.

제 3 절 형사책임추궁결정

제 128 조（형사책임추궁결정을 위한 증거의 수집）

수사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형사책임추궁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받을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다.

수사원은 형사책임추궁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증, 수색, 압수, 심리실험, 식별, 대질행위를 할수 있으며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제 129 조 （형사책임 추궁결정 조건）

형사책 임추궁결정은 범죄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를 저지른자와 그에게 형사책 임을 추궁할수 있다는것이 명백히증명된 경우에 한다.

제 130 조 （형사책임 추궁결정형식）

수사원은 형사책 임추궁결정을 하려는 경우 형사책 임추궁결정서를 작성한다.

제 131 조（형사책임추궁결정과 변호인선정권에 대한 통고）

수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때로부터 48 시간안으로 피심자에게 알려준다. 이 경우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수 있다는것을 알려주고 그 정형을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밝힌다.

제 132 조（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발송）

수사원은 형 사책 임 추궁결 정 서 등본을 48 시 간안으로 검 사에 게 보낸 다.

제 133 조（형사책임추궁결정의 변경, 취소, 추가）

수사원은 이미 적용한 형법의 조, 항, 단을 변경, 취소하거나 새로운 형법의 조, 항, 단을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밝 혀진 경우에는 해당한 결정을 하고 그날로 검사에게 알린다.

피 심자확정을 잘못하였다는것 이 밝혀 진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취소한다.

제 4 절 체포와 구속처분

제 134 조（체포, 구속처분의 목적）

체포, 구속처분은 피심자, 피소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며피심자, 피소자를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만날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한다.

제 135 조（체포, 구속처분의 시기）

체포,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기 전에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수 있다. 이경우 10 일 안으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다.

제 136 조（체포의 담당자）

체포는 수사원이 한다.

체포령장이 없이는 체포할수 없다.

제 137 조（구속처분의 종류）

구속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구류구속처분
2. 자택구속처분
3. 지역구속처분

제 138 조（구속기 간）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피심 자를 구속하는 기간은 1 개월이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수 있는범죄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피심자를 구속하는 기간은 10 일이다.

재판소가 돌려보낸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피심자를 구속하는 기간은 20 일,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수사를 위하여 피심자를 구속하는 기간은 7 일이다.

제 139 조（구속기간의 연장）

이 법 제 138 조 1 항과 3 항에 규정된 기간에 수사를끝낼수 없는 범죄사건인 경우 시（구역）, 군급수사원은 시（구역）, 군 검찰소 소장, 도（직할시）급수사원은 도（직할시）검찰소 소장, 중앙급수사원은 중앙검찰소의 승인을 받아구속기간을 1 개월간 연장할수 있다. 구속기간을 더 연장하여야 할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도（직할시）검찰소 소장,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1 개월씩 연장할수있다.

이 법 제 138 조 2 항에 규정된 기간에 수사를 끝낼수없는 범죄사건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속기간을 5 일간 연장할수 있다.

구속기간의 연장제기와 승인은 이 법 제 138 조와 이 조문에 규정된 수사를 위한 구속기간안에 한다.

제 140 조（구류구속처분의 절차）

피 심자를 구류구속처분하려 는 수사원은 체포령 장발급신청서와 구류구속처분결정 서를 검사에 게 보내 여 승인을 받는다.

피심자를 구류구속처분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체포령장을 제시하며 구류할 기관에는 구 류구속처 분결 정 서 등본을 보낸 다.

피심자를 구류한 때부터 48 시간안으로 구류의 사유와 구류장소를 그의 가족과 소속단체,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알려준 다.

제 141 조（자택구속처분의 절차）

피 심자를 자택구속처분하려 는 수사원은 자택구속처분결정 서를 검사에 게 보내 여 승인을 받는다.

피 심자를 자택구속처분하려 는 경우 그에 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자택 구속처분결정서를 제 시 하고 2 명 의 보증인을세 우며 보증인들로부터 피심자를 언제든지 수사원, 검사,재판소의 요구대로 보내겠다는 보증서를 받는다.

제 142 조（지역구속처분의 절차）

피 심자를 지 역구속처분하려 는 수사원은 지 역구속처분결정 서를 검사에 게 보내 여 승인을 받는다.

피심자에게 지역구속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지역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서약서를 받는다.

제 143 조（구속처분결정의 해제 및 변경）

수사원은 수사과정에 언제든지 리유를 밝힌 결정으로피심자에 대한 구속처분을 해제하거나 검사의 승인을 받아 구속 처분의 종류를 바꿀수 있다.

제 144 조（검사의 승인없이 체포, 수색, 압수할수 있는 사유）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과 같다.

1.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였을 경우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3.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지에서 범죄를 저지른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4. 범죄혐의자가 자살 또는 도주하려 하거나 뒤쫓기우고있을 경우

5. 범죄혐의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제 145 조（검사의 승인없이 체포한 범죄혐의자의 처리）

수사원은 이 법 제 144 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혐의자를구류하였을 경우 구류한 때부터 48 시간안으로 구류구속처분결정 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류한날부터 20 일안으로 조사하여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여야한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구류한 날부터 20 일안에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지 못하면 즉시 내놓는다.

구류된자에게 자택구속처분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구류구속처분을 변경하며 구류된자가 도주하였을 경우에는구류 구속처분을 중지한다. 도주하였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구류구속처분중지를 해제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제 146 조（구류하지 않을 범죄혐의자의 처리）

수사원은 체포하여 구류한 범죄혐의자가 구류대상이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류한 때로부터 48 시간안으로 체포 날자, 사유 같은것을 검사에게 알리고 놓아주어야 한다.

제 5 절 피심자심문

제 147 조 （피심자심문시기）

수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 추궁결정을 알려준 때부터 48 시간안으로 심문한다.

제 148 조（피심자심문시간）

피심자심문은 8 시～20 시사이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알리고 22 시까지피심자를 심문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심자심문에참가하여야 한다.

제 149 조 （피심자심 문장소）

구류한 피심자심문은 심문실에서 한다. 피심자의 호송은 수사원의 요구에 따라 계호원이 한다.

구류하지 않은 피심자를 필요한 장소에 불러 심문하려는 경우 그에게 호출장을 보낸다. 정당한 리유없이 호출에 응하 지 않을 경우에는 피심자를 구인할수 있다.

제 150 조（강제적인 심문의 금지）

수사원은 피심자에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유도유출의 방법으로 진술을 받을수 없다.

제 151 조（피심자심문의 개별화）

수사원은 피심자가 여럿인 경우 서로 련계를 가지지못하게 하고 다른 피심자가 없는 장소에서 피심자를 심문한다.

제 152 조（피심자심문에 기록수 및 립회인 참가）

피심자심문에는 기록수가 참가한다.

수사원은 필요에 따라 피심자심문에 립회인을 세울수있다.

제 153 조（조선말을 모르거나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는 피심자에 대한 심문）

수사원은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통역인을,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는 피심자를 심문할 경우그의 의 사표시를 해석할수 있는자를 참가시킨다. 이 경우 통역인과 해석인에게 거짓통역 또는 거짓해석을 하면형사책임을 진다 는것을 알려준다.

통역인 또는 해석인을 심문에 참가시켰을 경우에는그 사실을 조서에 밝힌다.

제 154 조（피심자의 권리）

피심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자기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2. 자기에게 추궁되는 범죄를 인정할수 없을 경우에 직접 반증하거나 정확히 조사해명하여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3.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수 있다.

4. 수사원을 비롯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하여제기할수 있다.

5. 자기의 진술을 심문조서에 직접 쓰거나 심문조서의내용을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6.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제 155 조（피심자의 의무）

피심자는 수사원의 물음에 답변하며 호출에 응하여야한다.

피심자는 증거를 없애는것같은 형사사건의 조사를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56 조（피심자심문의 절차）

수사원은 먼저 피심자의 신분관계와 가족관계, 경력관계를 확인한 다음 그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에 대한 의견을 묻고 범죄에대하여 먼저 말하게 한 다음 필요한 질문을 한다.

제 157 조（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

피심자를 심문한 경우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제 6 절 증인심문

제 158 조（증인심문장소）

증인심문은 그가 있는 장소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증인을 호출하여 심문할수 있다. 정당한 리유없이 호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인을 구인할수 있다.

제 159 조（조선말을 모르거나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는 증인에 대한 심문）

조선말을 모르거나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는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의 절차는 이 법 제 153 조에 따른다.

제 160 조（증인심문의 개별화）

증인심문은 다른 증인이 없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한다.

수사원은 증인심문이 끝날 때까지 같은 범죄에 대한증인들이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

제 161 조（14 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심문）

14 살에 이르지 못한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에는교원이나 부모, 후견인, 그밖의 보호자를 립회시킨다.

제 162 조（증인의 권리）

증인은 자기의 진술을 조서에 직접 쓰거나 조서의 내용을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자기의 권리 가 침해당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제 163 조（증인의 의무）

증인은 수사원이 부르면 제때에 응해야 한다.

증인은 범죄와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정확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 164 조（증인심문절차）

증인을 심문하는 수사원은 먼저 증인의 신분, 피심자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 심문하는 리유, 증인의 권 리와 의무를 설명하여주고 범죄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다.

수사원은 증인이 알고있는 범죄사실을 먼저 말하게하고 그의 진술이 끝나면 필요한 질문을 할수 있다.

제 165 조（증인심문조서의 작성）

증인을 심문하였을 경우에는 증인심문조서를 작성한다.

제 7 절 대질심문과 식별심문

제 166 조（대질심문의 사유）

같은 범죄에 대한 여러 진술자의 말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차이를 다른 방법으로 해명할수 없을 경우에는대질심문을 한다.

제 167 조（대질심문에서 지켜야 할 요구）

수사원은 해명하려는 문제를 대질심문을 받는자들에게미리 알려주지 말며 그들이 공모하거나 다른 진술자의 위협이나 거짓진술의 영향을 받아 본의아닌 진술을 하지못하게 한다.

제 168 조（대질심문의 절차）

수사원은 심문받는자들이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말하게 한다.

수사원은 심문받는자들의 진술이 끝나면 차이점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고 답변하게 한다.

수사원은 심문받는자들에게 상대방의 답변에 의견이있으면 물어보게 한다.

제 169 조（대질심문조서의 작성）

대질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대질심문을 받을자가 증인, 감정인인 경우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데 대하여 알려준정형, 문제로 된 사실에 대한 진술, 수사원의 질문과 차례로 답변한 내용, 상대방에게 서로 물어본 정형과 답변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 170 조（식별심문의 사유와 요구）

범죄사건해결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을 가려내기위하여 식별심문을 한다.

수사원은 식별대상과 비슷한 여 러 사람 또는 여 러 물건을 동시에 제시하여야 하며 식별과정에 자기의 의사를 암시하 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식별심문에는 립회인을 세운다.

제 171 조（식별심문의 절차）

수사원은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그가 알고있는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물어보고 조서에 밝힌다.

식별자에게 식별할 대상을 제시하고 식별시킨다.

식별과정에 식별자가 어떤 특징에 의하여 아는 사람또는 물건을 갈라냈는가를 묻고 그것을 확인한다.

제 172 조（식별심문조서의 작성）

식별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식별자가 증인인 경우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데 대하여 알려준 정형, 식별대상을 보이기전에

식별자에게 알고있는 대상의 특징을 물어본 정형과그에 대한 답변, 식별과정과 결과를 사실대로 밝힌다.

제 8 절 검증과 심리실험

제 173 조（검증의 목적）

수사원은 범죄와 관련이 있는 장소, 물건, 사람의 몸에서 사건해결에 의의가 있는 증거물, 흔적, 특징을 찾아내고 고 착하기 위하여 검증을 한다.

제 174 조（검증의 종류）

검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검증
2. 증거물검증
3. 죽은 사람에 대한 검증
4. 산 사람에 대한 검진

제 175 조（증거물검증）

범죄현장에서 찾아냈거나 압수한 물건과 문서는 현장에서 검증한다.

검증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물을 다른 장소에 옮겨놓고 검증할수 있다.

제 176 조（검증의 동의）

검증에 필요할 경우에는 임자의 동의를 얻어 묘를 파거나 물건을 파괴할수 있다.

임자의 동의를 얻을수 없는 경우에도 검증에 필요한행위를 할수 있다.

제 177 조（검진결정서 및 검진맡김결정서의 작성）

검진하려는 경우에는 검진결정서를 작성한다.

검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에는 검진맡김결정서를작성한다.

제 178 조（검증, 검진의 시간）

검증, 검진은 낮에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검증, 검진을 할수 있다.

제 179 조（검진결정서의 제시）

검진을 하는자는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검진결정서 또는 검진맡김결정서를 검진을 받을자에게 제시한다.

제 180 조（검증, 검진의 립회）

검증, 검진에는 립회인을 세운다.

녀성에 대한 검진에는 녀성을 립회시킨다.

제 181 조（검증에 감정인의 참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에 감정인을 참가시킬수 있다.

제 182 조（검증, 검진조서의 작성）

검증, 검진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검증, 검진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과 검진결과를 밝혀야 하며 략도와 사진을 첨부할수 있다.

수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검진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검진조서를 작성한다.

제 183 조（심리실험의 사유）

보거나 듣거나 일정한 행위의 가능성여부와 그러한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이루어질수 있었겠는가를 검토확인하기 위하 여 심리실험을 할수 있다.

제 184 조 （심 리실 험에 서 지켜야 할 요구）

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검토확인하여야 할 행위나 현상이 있은 당시와 같은 장소, 시간, 환경, 조건에서 하여야 한다.

2. 립회인을 세우고 여러번 하여야 한다.

3. 심리실험참가자에게 수사원의 의사를 강요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제 185 조（심리실험의 금지사유）

사람의 생명, 건강, 인격이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심리실험을 할수 없다.

제 186 조（심리실험조서의 작성）

심리실험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심리실험을 위한 조건보장정형, 심리실험과정, 결과를 밝힌다.

제 9 절 감정

제 187 조（감정의 사유）

감정은 범죄사건의 조사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한다.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상해정도, 정신장애증상이있는 증인, 범죄자의 정신상태, 반동사상문학예술작품, 력사유

물은 의무적으로 감정한다.

제 188 조（감정의 종류）

감정에는 법의감정, 법정신의학감정 , 법화학감정, 흔적감정, 필적감정, 탄도학감정 , 기술감정 , 회계 감정 , 인물감정 같은것이 속한다.

제 189 조（감정기 관）

감정은 전문감정기관이 한다.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분야의 국가자격또는 전문지식을 소유한자에게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제 190 조（감정인에 대한 통고）

감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범죄자에게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을 알려준다.

제 191 조（감정의 뢰）

감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정의뢰 결정서를 감정기관또는 감정인에게 보낸다. 감정의뢰 결정서에는 해명할 내용과 감정 에 필요한 자료, 감정인의 의무, 거짓감정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밝힌다.

감정을 의뢰할 경우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보내준다.

제 192 조（감정의뢰에 대한 의무적리행）

감정을 의뢰받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의무적으로 감정하며 감정을 의뢰한 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 193 조（감정인의 권리）

감정인은 감정을 의뢰한 기관에 감정에 필요한 자료나 해당 전문일군을 참가시켜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 194 조（감정기간과 회보）

감정인은 10 일안으로 감정을 진행하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의뢰한 기관에 회보한다.

감정서에는 감정에서 밝혀낸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감정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한다.

제 195 조（감정인심문과 재감정）

감정에서 명백하지 못한것이 있거나 감정서에 의문이있을 경우,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감정인을 심문하거나 재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제 10 절 수색과 압수

제 196 조（수색, 압수의 목적과 사유）

범죄자를 찾아내거나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이나 문서를 수집, 리용하기 위하여 수색, 압수를 한다.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를 밝히는데 필요한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압수는 사 건해결에 의의있는 물건, 문서를 내놓을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다.

제 197 조（수색, 압수의 승인）

수색, 압수는 검사의 승인밑에 한다.

수색, 압수하려는 수사원은 수색, 압수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 198 조（수색, 압수결정서의 제시）

수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수색, 압수결정서를 수색, 압수당하는자에게 제시한다.

제 199 조（수색장소의 경비조직）

수색장소에는 필요한 성원으로 경비를 세울수 있다.

제 200 조（수색, 압수의 시간）

수색, 압수는 낮에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수색, 압수를 할수 있다.

제 201 조（수색, 압수의 립회）

수색, 압수를 할 경우에는 립회인을 세운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건 또는 문서를 수색, 압수할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를, 녀성의몸을 수 색할 경우에는 녀성을 립회시킨다.

제 202 조（외교적절차에 의한 수색, 압수）

외교특권을 가지지 않는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나라 대표부의 건물 또는 살림집을 범죄 및 범죄자의 적발과 관련 하여 수색하거나 물건, 문서 같은것을 압수하려 할 경우에는 외교적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참가하며 대외사업일 군과 해당 대표부의 대표자를 립회시킨다.

제 203 조（압수대상과 방법）

압수는 범죄와 관련있는 물건과 문서만을 한다. 이 경우 압수품목록을 작성하며 압수당한자에게는 압수품목록등본을 준다.

제 204 조（수색, 압수조서의 작성）

수색, 압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수색, 압수과정에 발견한 물건, 문서의 위치, 일반적인 상태와 특징, 수량, 제기된 의견을 밝힌다.

제 11 절 재산담보처분

제 205 조（재산담보처분의 목적）

재산담보처분은 형벌의 집행을 보장하며 범죄로 입은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공민의 재산상손해를 보상시켜주기 위하 여 한다.

제 206 조（재산담보처분의 시기）

재산담보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고 손해보상자를 확정한 다음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항에 관계없이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있다.

제 207 조（재산담보처분의 대상과 범위）

재산담보처분은 재산몰수형을 줄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자의 재산이나 손해보상에 책임있는 피심자 또는 피심자의범죄 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직접 책임을 져야 할자와 그 련루자의 재산가운데서 재산상가치가 있는것으로 한다. 이경우 몰수 할 량 또는 손해보상청구가 제기된 량만큼 한다.

제 208 조 （재 산담보처 분결 정）

재산담보처분을 하려는 수사원은 그 리유를 밝힌 결정을 한다.

결정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209 조（재산담보처분의 방법）

재산담보처분을 하는 수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재산담보처분 결정서를 담보처분 당하는자에게 제시하며 립회 인을 세운다.

제 210 조（재산담보처분조서의 작성）

수사원은 재산담보처분을 하였을 경우 조서와 담보처분한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조서에는 재산담보처분진행 정형과 제기된 의견을 밝힌다.

제 211 조（재산담보처분의 해제, 취소）

수사원은 재산담보처분을 한 다음 그것이 필요없게되였거나 잘못되였다는것이 확증되면 해제 또는 취소결정을 한다.

제 212 조（재산담보처분을 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재산이 없어 담보처분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조서를 작성한다.

제 213 조（썩거나 못쓰게 될 재산의 처리）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썩거나 못쓰게 될수 있는물건은 그 리유를 밝힌 결정을 하고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이 경 우 결정서와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 12 절 수사의 종결

제 214 조（수사의 종결사유）

수사원은 범죄사건의 전모가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인정될 경우수사를 종결한다.

제 215 조（수사종결전 검사의 사건검토）

수사원은 수사를 종결하기 전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수사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넘겨받은 검사는 10 일간 수사정형을 검토하고 수사원에게 필요한 의견을 준다.

검사는 범죄사건의 전모가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는가, 수사를 이 법에 규정 된 요구와 절차대로 하였는가, 인정된 범죄에 대하여 형법의 조, 항, 단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하는것을 사건기록검토와 형사소송관계자들과의 담화 또는 현지료해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한다.

제 216 조（수사의 종결절차）

수사를 종결하려는 수사원은 수사를 끝낸다는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사건기록을 보여주며 신청할것이 없는가를 물 어본다.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수사를 더 하며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한다.

피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수사를 더 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한 기록을 보여준다.

제 217 조（검사의 수사종결참가）

수사종결은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제 218 조（수사종결조서의 작성）

수사원은 수사를 종결하면 조서를 작성한다.

수사종결조서에는 피심자의 이름, 종결한 날자와 시간,사건기록을 보인 정형, 제기된 의견의 처리정형, 검사의참가정 형 같은것을 밝힌다.

제 219 조（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

수사원은 수사를 종결한 다음 그날로 사건을 검사에게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긴다.

제 220 조（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제기와 처리）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범죄혐의자, 피심자, 보증인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것을알았 을 경우 그날부터 수사를 종결하기 전까지 수사원,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수사원, 검사는 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이 자기에게 제기되였을 경우 48 시간안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 또는검찰소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의견을 제기받은 검사 또는 검찰소장은 3 일안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제 4 장 기 소

제 221 조（기소의 임무）

기소의 임무는 수사종결한 범죄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것이다.

제 222 조（기소기간과 구속기간）

검사는 수사를 종결한 날부터 5 일안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은 3 일안으로 처리한다.

기소를 위하여 피심자를 구속하는 기간은 기소기간과 같다.

제 223 조 （범죄사건기소）

검사는 피심자에게 형벌을 적용할수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한다.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하는 경우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증거물과 함께 보낸다.

제 224 조 （기소장작성）

범죄사건을 기소하려는 검사는 기소장을 작성한다.

기소장에는 날자, 작성자의 소속직무, 이름, 피심자의 신분관계, 수사에서 조사확증된 사실과 증거, 피심자의 형사책 임을 확정하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의의를 가질수 있는 사정, 인정한 범죄에 해당한 형법의 조, 항, 단과 형사소 송법조항, 기소할 재판소를 밝힌다.

제 225 조（기소장에 첨부할 문건）

기소장에는 재판심리에 참가시켜야 할 피심자와 증인, 감정인의 이름과 사는 곳, 피심자를 구속한 날자와 구속되여있 는 곳, 증거물, 손해보상청구와 재산담보처분정형을 밝힌 문건을 첨부한다.

제 226 조（반복기소의 금지）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판결할수 없다는 리유로 재판소가 반송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해당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 을 경우에는 다시 기소할수 없다.

제 5 장 제 1 심재판

제 I 절 제 I 심재판의 임무와 제 I 심재판소구성

제 227 조（제 1 심재판의 임무）

제 1 심재판의 임무는 재판심리를 통하여 범죄와 피소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분석평가한데 기초 하여 판결을 내리는것이다.

제 228 조（제 1 심재판의 공개）

제 1 심재판은 공개한다.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수 있을 경우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제 229 조（재판소의 독자성）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 230 조（확정된 사실의 인정）

민사재판과 중재에서 확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나 확정된 사실이 범죄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형 사재 판에 서 심 리 확정 한다.

제 231 조（제 1 심재판소의 구성）

제 1 심재판소는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 명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 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한다.

제 232 조（재판소성원의 고착과 교체）

같은 범죄사건의 재판은 처음 구성하였던 재판소성원으로 한다.

재판심리도중에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제 233 조（재판심리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의 참가）

재판심리는 검사와 변호인의 참가밑에 한다.

피소자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가없이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제 1 심재판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 234 조（재판심리에서 재판장）

재판장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 리와 재판관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재판질서를 철저 히 지키도록 통제한다.

제 235 조（재판심리에서 검사）

재판심리에서 검사는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범죄와 피소자에 대하여 폭로하고 증명하며 정확한 법적책임이 지워지 도록 주장한다.

제 236 조（재판심리에서 변호인）

재판심리에서 변호인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소자의 행위가 옳게 분석평가되며 그의 법적권리가 정 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제 237 조（법정 정면장식과 좌석배치, 복장의 착용）

법정 정면벽가운데 웃부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을 걸며 그아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드리 운다.

재판소성원은 법정 주석단자리에, 검사와 변호인, 증인, 피소자는 주석단아래의 좌측과 우측에 서로 마주한 자리에, 재 판서 기 는 주석 단아래 의 가운데 자리 에 앉는다.

재판소성원은 재판할 때 재판복을 입으며 검사와 재판서기는 정해진 복장을 착용한다.

제 238 조（피소자의 재판심리참가）

재판심리에는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재판심리의 참가를 거부하는 피소자는 구인 또는 구류하여 재판한다.

제 239 조（법정에서 피소자구속금지）

법정에서는 피소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항하거나 도망치려는 피소자는 구속할수 있다.

제 240 조（피소자의 권리）

피소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재판소성원들과 재판관계자들가운데 이 법 제 14 조～제 19 조의 사유가 있는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제신청을 할수 있 다.

2. 기소사실이 근거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것을 부인할수 있다.

3. 새로운 증거수집을 신청할수 있으며 새로운 증인의 재판참가를 요구할수 있다.

4. 증인 및 감정인 또는 공동피소자에게 질문할수 있다.

5. 변호인을 선정하거나 다른 변호인으로 바꾸어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으며 변호인의 방조를 포기할수 있다.

6. 재판에서 자기의 리익과 권리가 침해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7. 사실심리가 끝난 다음 마지막말을 할수 있다.

8. 상소할수 있다.

제 241 조（피소자의 의무）

재판에서 피소자는 물음에 답변하며 재판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242 조（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 사유）

손해보상청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상청구를 따로 할수 있다.

제 243 조（현지공개재판의 조직）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 체의 대표와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자들이 피소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수 있다.

제 244 조 （제 1 심재 판기 간과 구속기 간）

제 1 심재판소는 재판준비판정을 한 날부터 1 개월안으로 재판을 끝낸다. 그러나 제 1 심재판기간에 재판을 끝낼수 없는 특별히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0 일간 연장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소자에 대한 재판은 재판준비판정을 한 날부터 10 일안으로 끝낸다.

제 1 심재판을 위하여 피소자를 구속하는 기간은 제 1 심재판기간과 같다.

제 245 조（재판단계에서의 사건이송）

판사,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판정을 할수 있다.

제 246 조（재판에 대한 감시）

재판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검사는 재판에 참가하거나 재판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법적요구와 절차에 따라 정확히 진행되는가를 감시 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검사의 의견을 받은 경우 재판준비에서는 판사, 재판심리에서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 2 절 재판준비

제 247 조（재판준비의 담당자）

재판준비는 사건을 맡은 판사가 한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48 시간안으로 재판준비판정을한다.

제 248 조 （사건검토내용）

재판준비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사에서 범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되였는가.
2. 기소에 근거가 있는가.
3.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형법의 조, 항, 단이 옳게 적용되였는가.
4. 근거없이 범죄의 공모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은것은 없는가.
5.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요구, 절차를 정확히 지켰는가.

제 249 조（범죄현장과 증거의 확인）

판사는 재판심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에 나가 범죄현장과 증거를 확인할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수 없다.

제 250 조（범죄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

판사는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여 재판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기소된 범죄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법의 조, 항, 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기소된 형법의 조, 항, 단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범죄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긴다.

제 251 조（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반송하는 판정）

재판심리를 할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심하게 어겼거나 기소장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반송하는 판정을 한다.

제 252 조（재판준비에서 검사의 의견청취）

판사는 재판준비에서 이 법 제기조, 제 80 조 2 호, 제 245 조, 제 250 조 2 항, 제 251 조에 따라 판정하려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는다.

항의를 위하여 검사가 요구하는 판정서등본은 판정을한 날부터 2 일안으로 보낸다.

제 253 조（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한 검사의 항의）

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검사는 상급재판소에 항의할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제 314 조에 따른다.

제 254 조（기소장 및 판정서등본의 송달）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3 일전에 피소자에게 기소장등본을 보낸다.

기소된 형법의 조, 항, 단을 고치는 판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3 일전에 피소자와 변호인에게 판정 서등본을 보낸다.

제 255 조（재판심리날자의 통지）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3 일전에 인민참심원, 검사,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에게 재판심리날자를 알려주

며 증인, 감정인에게는 호출장을 보낸다.

재판심리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할 증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한다.

앞항의 경우 구인절차는 이 법 제 158 조에 따른다.

제 256 조（신청, 의견의 처리）

범죄사건이 기소된 다음 재판준비단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신청과 의견은 사건을 맡은 판사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재판심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신청과 의견은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 3 절 재판심리

제 257 조（제 1 심재판의 절차）

제 1 심재판은 재판심리시작, 사실심리, 론고와 변론, 피소자의 마지막말, 판결의 선고절차로 한다.

제 258 조（제 1 심재판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재판시작을 알리고 피소자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기소장등본접수정형과 구속날자를 묻고 피 소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제 259 조（재판관계자들의 의견청취）

재판장은 재판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알려주고 바꿀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는다.

제 260 조（결석한 증인, 감정인의 통고）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호출한 증인, 감정인이 결석한 경우 그 리유를 재판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제 261 조（새 증거자료의 신청권과 손해보상청구권의 통고）

재판장은 재판관계자들에게 새 증거자료를 신청하거나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는것을 알려주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 262 조（사실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것을 알린 다음 검사에게 기소장을 읽도록 한다.

제 263 조（기소사실의 인정확인）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기소사실을 인정하는가를 묻는다.

제 264 조（심리순서의 확정）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재판소성원들과합의하여 심리순서를 정한다.
심리순서는 법정에 알린다.

제 265 조 (피소자심문순서)

피소자에 대한 심문은 먼저 피소자에게 자기 범죄를 말하게 한 다음 재판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재판관계자들이 하도 록 한다.

제 266 조 (피소자에 대한 개별심문)

여러명의 피소자를 함께 심리하는 재판소는 피소자를 한사람씩 법정에 불러다 심문한다.

제 267 조 (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에 대한 처분)

재판장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는 판정으로 법정에서 내보내고 사실심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사실심리를 끝낸 다음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제 268 조 (증인심문의 시작)

증인에 대한 심문은 순서에 따라 1 명씩 법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 피소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 다는것을 알려준 다음 그가 알고있는것을 말하게 한다.

제 269 조 (증인심문의 순서)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를 심문할것을 요구한자가 먼저 심문하게 한다.

앞항에 지적된자의 심문이 끝나면 재판관계자들이 재판장의 승인을 받고 증인을 심문한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도 증인에게 물어볼 기회를 준다.

제 270 조 (재심문, 대질심문)

필요에 따라 이미 심문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거나 증인과 증인, 증인과 피소자를 대질심문할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판장은 재판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심문받은 증인을 사실심리가 끝나기 전에 내보낼수 있다.

제 272 조（증인심문의 중지）

사실심리에서 범죄가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증인심문을 그만둘수 있다.

제 273 조（재판심리에 감정인의 참가）

감정인을 필요에 따라 재판심 리에 참가시킬수 있다.

제 274 조（재판심리에서 재감정）

재판소는 감정결과에 부족점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 판정으로 감정을 다시 시킬수 있다.

제 275 조（증거물과 증거문서의 검토확인）

재판소는 사실심 리에서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검토확인한다.

검사, 변호인도 사실심 리과정에 언제든지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검토확인할수 있다.

제 276 조（진술서, 심문조서의 검토확인방법）

재판소는 사실심리에서 진술서, 심문조서를 읽는 방법으로 증거를 검토확인할수 있다.

제 277 조（증거자료의 현지확인）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수 있다.
재판소의 위임에 따라 재판 장도 할수 있다.

제 278 조（증거수집의 금지）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직접 증거를 수집할수 없다.

증거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반송한다.

제 279 조（손해보상청구의 심리）

사실심리에서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증거심리를 끝내고 손해보상청구에 대한 심리를 한다.

재판장은 손해보상청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에게 손해보상청구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피소자에게 답변하게 한다.

제 280 조（사실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인민참심원에게 심리할것이 더 없는가를 묻고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것을 알린다.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관계자를 사실심리에 참가시켰을 경우 그를 내세워 교훈을 찾게 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것을 알린다.

제 281 조（론고와 변론의 순서）

재판장은 사실심리가 끝나면 검사, 변호인의 순서로 론고와 변론을 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재판에 참가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 피해자, 손해보상청구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자들에게도 말 을 하게 할수 있다.

제 282 조（론고의 내용）

론고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규탄하고 그것이 유죄로 되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론증하며 기소된 형법의 조, 항, 단의 형벌을 적용할데 대한 내용으로 한다.

제 283 조（변론의 내용）

변론은 형사소송법의 요구에 맞게 재판이 진행된 정형과 피소자의 법적권리보장정형, 기소된 범죄사실과 적용된 기소 법조인정정형, 범죄의 원인과 찾아야 할 교훈, 피소자의 개준성정도를 근거있게 밝히면서 형벌량정에서 참작하여줄데

대한 내용으로 한다.

피소자의 행위가 무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죄로 되는 근거를 정확히 밝힌다.

제 284 조（보충론고와 변론）

재판장은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이 보충적으로 론고와 변론할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을 허용할수 있다.

제 285 조（론고와 변론의 기초）

론고와 변론은 재판심리에서 검토확인된 증거에 기초한다.

제 286 조（피소자의 마지막말）

재판장은 론고와 변론이 있은 다음 피소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준다.

피소자의 마지막말에서 범죄사건의 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판 심리를 다시 한다.

제 287 조（재판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피소자의 마지막말이 끝나면 재판심리가 끝났다는것을 알리고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 실에서 판결채택을 위한 합의를 한다.

제 4 절 기소의 추가와 변경

제 288 조（기소의 추가사유）

기소의 추가는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응당 적용하여야 할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다.

제 289 조（기소의 추가시기）

기소의 추가는 재판준비, 재판심리에서 할수 있다.

제 290 조（기소의 추가절차）

재판소는 범죄사실은 밝혀져있으나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기소를 추가한 다 음 피소자와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재판심리를 유기로동교화형이상의 형벌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은 5 일간, 로동단 련형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은 3 일간 미룰수 있다.

제 291 조（기소의 변경사유）

기소의 변경은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 항, 단을 형벌을 가볍게 줄수 있는 조, 항, 단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거나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형법의 조, 항, 단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다.

제 292 조（기소변경의 시기）

기소의 변경은 재판준비와 재판심리에서 한다. 제 2 심재판, 비상상소심에서도 기소의 변경을 할수 있다.

제 293 조（기소의 변경절차）

재판소는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 항, 단을 형벌을 가볍게 줄수 있는 조, 항, 단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거나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벌을 가볍게 줄수 있는 조, 항, 단으로 고쳐야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판정으로 고친 다음 계속 심리하여 판결한다.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벌을 무겁게 줄수 있는 조, 항, 단으로 고쳐야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판 정으로 고친 다음 피소자와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재판심 리를 유기로동교화형 이상의 형 벌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은 5 일간, 로동단련형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은 3 일간 미룰수 있다.

제 294 조（새로운 범죄자 및 법위반자에 대한 처리）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피소자가 아닌 다른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행정처벌을 주어야 할 사실이 있다는것을 발견한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반송하는 판정을 하거나 행정처벌을 주는 판정을 할수 있다. 이 경우 구속처분판정을 할수 있다.

제 5 절 판결

제 295 조（판결의 조건）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 법의요구에 맞 게 판결을 내린다.

제 296 조（판결채택의 참가성원）

판결의 채택에는 재판심리를 한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참가한다.

제 297 조（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기소된 범죄가 있었는가.
2. 범죄를 피소자가 저질렀는가.
3. 범죄의 표징을 갖추었는가.
4. 피소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줄것인가.
5. 손해보상청구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6. 증거물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7.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8. 담보처분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제 298 조（판결, 판정의 채택）

판결과 재판심리에서 하는 판정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수 있다.

제 299 조（판결의 종류）

판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2. 사회적교양처분판결

3. 무죄판결

제 300 조（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한다.

제 301 조（구속처분의 해제）

무죄판결,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 또는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경우피소자에 대한 구속처분을 그날로 해제한다.

제 302 조（증거물,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판결, 판정을 한 경우 범죄의 증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는 이 법 제 37 조, 제 211 조에 따른다.

제 303 조（손해보상청구의 해결）

손해보상청구의 해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손해보상청구가 정당할 경우에는 손해를 보상시킨다.

2. 범죄가 없거나 피소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기각한다.

3.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 구를 제기할수 있다.

제 304 조 （사건반송）

재판소는 판결을 할수 없을 정도로 수사에서 범죄를충분히 밝히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법의 원칙 과 절차를 심하게 어겼다는것이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반송하는 판정을 한다.

제 305 조（사건반송의 제한）

재판소는 다른 증거를 더 수집하지 않아도 이미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재판을 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범죄사건 을 반송할수 없다.

이 법 제 139 조에 규제된 수사단계의 구류기간이 다 지나간 범죄사건이 반송되였다가 다시 기소된 경우에도반송할수 없다.

제 306 조（판결서의 작성）

판결서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국호와 재판날자,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 이름, 사건명,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정형, 피소자의 신분관계,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과 사는 곳,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과 그에 대한 증거 의 설명, 손해보상청구와 그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 그밖에 사건의 성격에 따라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문제를 밝히며 해당 판결이 의거하는 형사소송법조항, 형법의 조, 항, 단과 형벌의 적용문제, 손해보상청구, 증거물, 재산담보처분, 구속처분문제 , 상소절차를 지적한다. 형벌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서 ,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서 , 무죄판결서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 307 조（판결서, 판정서등본의 송달）

재판소는 판결, 판정을 한 날부터 2 일안으로 검사,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에게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보내 준다.

제 308 조（재판조서의 작성기간과 열람）

재판서기는 재판이 끝난 날부터 5 일안으로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검사, 변호인은 재판조서작성이 끝난 다음날부터 5 일안으로 조서를 볼수 있으며 수정, 보충, 삭제할 내용을 서면으로 제기할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을 경우 재판서기에게 고치게 하며 부당할 경우 판정으로 거부한다.

제 309 조（재판조서에 반영할 내용）

재판조서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판날자, 장소
2.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
4. 피소자의 신분관계
5.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 사는 곳
6. 재판심리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행위
7. 재판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과 신청
8.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가 내린 판정
9. 론고와 변론의 내용
10. 피소자가 한 마지막말

제 310 조（상소, 항의제기）

제 1 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수 있으며 검사는 항의할수 있다.

제 311 조（검사의 항의관할）

시（구역）, 군검찰소 검사는 해당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 도（직할시）검찰소, 중앙검찰소 검사는 해당 도（직할시）재 판소 및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 특별검찰소 검사는 해당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항의할수 있다.

제 312 조（상소, 항의할수 없는 판결, 판정）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소, 항의를 할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재판소 제 1 심재판에서 채택한 판결, 판정

2. 제 2 심재판, 비상상소심, 재심에서 채택한 판정

제 313 조 （상소절차）

상소하려는자는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 일안으로 상소장을 제 1 심재판소에 낸다. 그러나 로동단련형을 받은자는 3 일안으로 낸다.

제 1 심재판소는 상소기간이 지나면 그날로 상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상급재판소에 보낸다.

제 314 조（항의 절차）

항의하려는 검사는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 일안으로 항의서를 제 1 심재판소에 낸다. 그러나 로동단련형 을 적용한 사건의 판결, 판정에 대한 항의서는 3 일안으로 낸다.

제 1 심재판소는 항의기간이 지나면 그날로 항의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항의한 검사의 상급검찰소에 보낸다.

항의를 접수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48 시간안으로 사건검토결정을 하며 그날부터 로동단련형을 적용한 사건기록은 3 일, 그밖의 형벌을 적용한 사건기록은 10 일안으로 검토하고 제 1 심재판소의 상급재판소에 사건기록과 함께 보내거나 항의를 취소할수 있다.

제 315 조（판결, 판정의 집행중지）

상소, 항의가 제기된 판결, 판정은 집행하지 않는다.

제 316 조（제 1 심판결, 판정의 확정）

제 1 심판결, 판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확정된다.

1. 상소, 항의기간이 지났을 경우
2. 제 2 심재판소가 제 1 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지지하였을 경우
3. 상소, 항의할수 없는 판결, 판정을 내렸을 경우

제 6 장 제 2 심재판

제 317 조（제 2 심재판의 임무）

제 2 심재판의 임무는 사건기록과 상소, 항의자료에 근거하여 제 1 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 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을 바로잡는것이다.

제 318 조（제 2 심재판소의 구성）

제 2 심재판은 판사 3 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제 319 조（제 2 심재판기간과 구속기간）

제 2 심재판소는 상소, 항의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판정을 한 날부터 25 일안으로 사건을 심리해결한다.

로동단련형사건은 상소, 항의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판정을 한 날부터 7 일안으로 끝낸다.

제 2 심재판을 위하여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제 2 심재판기간과 같다.

제 320 조（제 2 심재판심리에 검사, 변호인 참가）

제 2 심재판심리에는 검사가 참가하며 피소자, 변호인이 상소한 경우 변호인을 참가시킨다.

제 321 조（사건기록의 발송과 검사의 검토기간）

제 2 심재판소는 재판심리를 하기 전에 상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낸다. 이 경우 검사는 로동단련형을 적용 한 사건기록은 3 일, 그밖의 사건기록은 10 일간검토할수 있다.

제 322 조（제 2 심재판날자의 통지）

제 2 심재판소는 재판날자를 재판하기 2 일전에 검사, 변호인에게 알린다.

제 323 조（제 2 심재판심리의 범위）

제 2 심재판심리에서는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된 부분의 내용심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수사, 제 1 심재판에서 이 법의 요구와 절차를 심히 어겨 판결에 영향을 준것이 없는가를 검토한다.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되지 않은 사실에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검토한다.

제 324 조（제 2 심재판심리의 절차）

재판장은 재판심리시작을 알리고 제 1 심재판소가 재판한 범죄사건의 내용과 판결, 판정, 그에 대한 상소 또는 항의리

유를 보고하고 검사, 변호인, 재판소성원들에게 의견을 말하게 한다.

제 325 조（제 2 심재판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제 2 심재판심리를 끝낸다는것을 알린 다음 판정을 하기 위하여 재판소성원 들과 합의한다.

제 326 조（판정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판정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상소 또는 항의에 근거가 있는가.

2. 인정한 사실과 그에 적용한 형법의 조, 항, 단이 맞는가.

3. 형벌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4. 수사 또는 제 1 심재판심리에서 이 법의 요구와 절차를 정확히 지켰는가.

제 327 조（판정의 채택）

판정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제 328 조（제 1 심판결, 판정의 지지）

제 2 심재판소는 제 1 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게 채택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 329 조（사건의 반송）

제 2 심재판소는 수사 또는 제 1 심재판심리에서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범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거나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를 심하게 어겼거나 인정한 사실과 맞지 않게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하였거나 형벌을 정하였을 경우 그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 또는 제 1 심재판소에 반송한다.

제 330 조（사건의 기각）

제 2 심재판소는 제 1 심재판소에서 기각하여야 할 범죄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그 판결을 취소하고범죄사건을 기 각한다.

제 331 조（판결의 변경）

제 2 심재판소에서 제 1 심재판소의 판결을 직접 고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제 1 심재판소가 형법의 조, 항, 단을 형벌이 무겁게 규정된 조, 항, 단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2. 제 1 심재판소가 형벌을 무겁게 적용한 경우

3. 제 1 심재판소가 응당 적용하여야 할 부가형벌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

4. 손해보상청구심리에서 사실인정은 옳바로 하였으나 판결을 잘못 내린 경우

제 332 조（반송사건에 대한 재판심리）

제 2 심재판소가 반송한 범죄사건을 접수한 제 1 심재판소는 제 2 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른다.

제 333 조（불리익변경의 금지）

상소에 근거하여 판결이 취소된 범죄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제 1 심재판소는 처음 판결을 한 재판소가 정한 형벌보다 무 겁게 줄수 없다.

제 334 조 （부대판정）

제 2 심재판소는 수사 또는 제 1 심재판의 부족점을 판정으로 지적할수 있다.

수사 또는 제 1 심재판소는 제 2 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른다.

제 335 조（재판결과의 통지）

제 2 심재판소는 재판을 끝낸 날부터 2 일안으로 판정서등본을 검사와 상소인에게 보내준다.

제 7 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제 1 절 비상상소심

제 336 조（비상상소심의 임무）

비상상소심의 임무는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것이다.

제 337 조（비상상소심재판소의 구성）

중앙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 명으로 구성된 재 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중앙재판소의 제 1 심판결, 판정과 제 2 심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서 심리해결한다.

제 338 조（비상상소심의 기간）

비상상소심재판소는 비상상소가 제기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판정을 한 날부터
1 개월안으로 사건을 심리해결한다.

로동단련형사건은 비상상소가 제기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판정을 한 날부터 7 일안으로
끝낸다.

비상상소심을 위하여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비상상소심의 기간과 같다.

제 339 조（검사의 비상상소심참가）

중앙재판소 판사 3 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제 340 조（비상상소의 제기자）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제 341 조（비상상소의 제기기간）

비상상소의 제기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에 대한 비상상소는 판결을 받은자가 죽은다음에도 제기할수 있다.

제 342 조（비상상소의 제기사유）

비상상소의 제기는 범죄사건의 처리에서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것이 판결, 판정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나타나있을 경우에 한다.

제 343 조（비상상소를 제기할수 없는 범죄사건）

형벌집행이 끝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벌이 낮다는 리유로 비상상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지난 범 죄사건은 비상상소를 제기할수 없다.

제 344 조（비상상소의 제기신청）

비상상소를 제기할 범죄사건은 해당한 의견을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낸 다.

각급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제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수 있다.

제 345 조（비상상소제기를 위한 사건기록요구）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범죄사건이든지 기록을 요구할수 있다.

비상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건기록은 그날로 돌려보낸다.

제 346 조（비상상소제기를 위한 판결, 판정집행의 정지）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재판소를 통하여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수 있다. 그러나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집행을 정지시킬수 없다.

제 347 조（비상상소의 제기）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제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비상상소제기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중앙재판소에 보낸다.

중앙재판소 소장이 제기한 비상상소사건은 비상상소심을 하기 전에 사건기록을 중앙검찰소에 보낸다.

제 348 조（비상상소심날자의 통지）

중앙재판소는 비상상소심날자를 재판하기 2 일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린다.

제 349 조（비상상소심의 범위）

비상상소심 에서는 비상상소제 기사유에 근거 하여 범 죄와 그것을 증명 한 증거가 맞는가, 피소자를 정 확히 확정 하였는가,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를 어긴것은 없는가, 형벌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같은 판결, 판정의 합법성, 근거성을 전 면적으로 심리해결한다.

제 350 조（비상상소사건의 심리절차）

비상상소심은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중앙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판 정을 한다.

제 351 조（비상상소사건의 처리）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이 법 제 328 조～제 331 조에 따라 범죄사건을 처리한다.

제 352 조（판정의 집행시기）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없이 즉시 집행한다.

제 353 조（비상상소심결과의 통지）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한 날부터 2 일안으로 비상상소제기를 신청 또는 청원한자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내준다.

제 2 절 재심

제 354 조（재심의 임무）

재심의 임무는 새로운 사실에 기초하여 확정된 판결, 판정의 잘못을 바로잡는것이다.

제 355 조（재심재판소의 구성）

재심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 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제 356 조（재심의 기간）

재심재판소는 재심이 제기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판정을 한 날부터 1 개월안으로 사건을 심리해결한다.

로동단련형사건은 재심이 제기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판정을 한 날부터 7 일안으로 끝낸다.

재심을 위하여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재심의 기간과 같다.

제 357 조（검사의 재심참가）

재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제 358 조（재심의 제기자）

재심은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제 359 조（재심의 제기기간）

재심의 제기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제기는 판결을 받은자가 죽은 다음에도 할수 있다.

제 360 조（재심제기의 사유）

재심제기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판결, 판정의 기초로 하였던 증거가 거짓이라는것이 알려진 경우

2.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로서 재판할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것이 새로 알려진 경우

제 361 조（재심제기의 신청）

재심제기신청은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검사에게 한다.

앞항의 신청을 접수한 검사는 1 개월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근거가 있을 경우 재심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기 록과 함께 조사자료를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검사가 재심제기사유로 되는 자료를 직접 얻었을 경우에도 앞항에 따른다.

제 362 조（재심제기를 위한 판결, 판정집행정지）

중앙검찰소 소장은 필요에 따라 재심을 제기하기 위하여 기록을 요구한 범죄사건의 판결, 판정에 대한 집행을 해당

재판소를 통하여 정지시킬수 있다.

제 363 조（재심의 제기와 거부）

중앙검찰소 소장은 재심의 제기신청이 정당할 경우 재심제기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중앙재판소에 보낸다.

재심제기신청이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을 돌려보낸다.

제 364 조（재심날자의 통지）

중앙재판소는 재심날자를 재판하기 2 일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린다.

제 365 조（재심의 범위）

재심에서는 재심제기의 사유로 되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심리확정하면서 피소자를 정확히 확정하였는가, 형벌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하는것을 심 리해 결한다.

제 366 조（재심사건의 심리절차）

재심은 검사의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 367 조（재심사건의 처리）

재심제기가 부당할 경우에는 재심제기를 거부하고 확정된 판결, 판정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다.

재판소는 재심의 제기가 정당할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검사 또는 제 1 심재판소에 반송하거나직접 기각한다.

제 368 조（재심판정의 집행시기）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된다.

제 369 조（재심결과의 통지）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한 날부터 2 일안으로 검찰기관을 통하여 재심제기를 신청한자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낸다.

제 8 장 판결, 판정의 집행

제 370 조（판결, 판정의 집행시기）

판결, 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사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수 있다.

제 371 조（집행문건의 발송）

재판장은 판결, 판정이 확정되면 2 일안으로 집행문건을 해당 형벌집행기관에 보낸다.

제 372 조（판결, 판정집행에 대한 감시）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사형판결의 집행은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제 373 조（사형판결의 집행）

사형판결의 집행은 사형집행 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이 한다.

제 374 조（사형집행결과의 회보）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은 사형을 집행하고 결과를 3 일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알린다.

제 375 조（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 판정서등본, 확정통지서를 받은 해당 형벌집행기관이 한다.

제 376 조（형벌집행기간의 계산）

무기로동교화형 , 유기로동교화형 , 로동단련형의 형벌집행 기간계산은 판결을 집행하는 날부터 한다.

피소자가 이미 구속되여있었을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계산한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중에 있는자가 형벌집행기관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형벌집행기간

으로 계산한다.

제 377 조（선거권박탈형 및 벌금형의 집행）

선거권박탈형의 집행은 기본형벌집행이 끝난 다음 형벌집행기관이 보낸 판결서등본과 출소증등본을 접수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한다.

벌금형의 집행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 378 조（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의 집행）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의 집행은 기본형벌집행이 끝난 다음 형벌집행기관이 보낸 판결서등본과 출소증등본을 접수한 해당 자격을 준 기관이 한다.

제 379 조（재산몰수형의 집행）

재산몰수형의 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 날부터 1 개월안으로 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이 경우 립회인을 세우며 집행조 서 와 몰수재 산목록을 작성 하여 사건기록에 첨 부하고 몰수당한자에 게 는 몰수재 산목록등본을 준다.

재산몰수형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은 해당 재판소의 판사가 3 일안으로 해결한다.

제 380 조（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의 집행）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의 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 날부터 2 개월안으로 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이 경우 립회인을 세

우고 집행조서와 손해보상재산목록 2 부를 작성하며 손해보상재산목록 1 부는 손해 보상청구자에게 주고 재산을 넘겨받았 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은 해당 재판소의 판사가 3 일안으로 해결한다.

제 381 조（재산의 강제집행）

재산소유자가 재산몰수형,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집행을 정당한 리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한다.

제 382 조（형벌집행의 중지사유）

무기로동교화형 ,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에게 일시적인 정신장애가 있거나 그가 중병을 앓고있거나 도 주하여 형벌집행을 계속할수 없는 경우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에게서 숨긴 범죄가 드러나 그에 대한 형사사건 취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형벌집행을 중지한다.

임신한 녀성에 대하여서는 산전 3 개월부터 산후 7 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중지한다.

제 383 조（형벌집행의 기각사유）

무기로동교화형 ,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가 회복할수 없는 정신장애자로 되였거나 죽은 경우에는 형벌 집행을 기각한다. 이 경우 감정을 한다.

제 384 조（형벌집행의 중지 및 기각, 만기전석방의 제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집행을 중지 및 기각하거나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을데 대한 제기는 형벌집행기관의 책임자가 해당 검찰소 소장에게 한다.

검찰소 소장은 제기받은 내용을 검토확인하고 그것을 부결하거나 해당 재판소에 제기한다.

제 385 조（형벌집행의 중지 및 기각, 만기전석방의 심리）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집행을 중지 및 기각시키거나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는것은 해당 재판 소 또는 판사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집행의 중지는 제기를 받은 때부터 3 일안으로, 기각시키거나 형기가 끝 나기 전에 내놓으며 형기를 줄여주는것은 10 일안으로 해결한다.

제 386 조（형벌집행중지를 받은자의 처리 및 관리）

일시적인 정신장애자로 되였거나 중병을 앓고있어 형벌 집행을 중지한자에게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임신하여 형벌집 행 을 중지 한자에 게 는 자택 구속처 분 또는 지 역 구속처 분을 적 용한다.

형벌집행을 중지받은자에 대한 관리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이 한다.

제 387 조（형벌집행중지의 해제）

해당 재판소 또는 판사는 일시적인 정신장애자로 되였거나 중병을 앓고있거나 임신한것으로 하여 형벌집행을 중지하 였던 무기로동교화형 , 유기로동교화형 , 로동단련형을 받은자에게 형벌집행중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것을 해제하는 판 정을 한다.

형벌집행중지기간은 형벌집행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 388 조（형벌집행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중지중에 있는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리）

형벌집행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중지중에 있는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건의 취급시작은 이 법 제 45 조에 따른다.

제 389 조（판결, 판정집행과 관련한 신청의 심리날자 통지）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소는 심리날자를 2 일전에 검사에게 알린다.

제 390 조（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에 대한 재판심리）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에 대한 재판심리는 제 2 심재판의 절차에 따른다.